



주40시간제, 이렇게 적용됩니다.

구분	주44시간제	주40시간제
법정 근로시간	- 주44시간	- 주40시간
월차휴가	- 월 만근시 1일	- 폐지
연차휴가	- 1년 만근시 10일, 9월이상 출근시 8일 -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-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	- 8월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~25일 - 2년당 1일 가산 -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부여
휴가사용 촉진방안	- 규정없음	-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: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 면제
선택적 보상 휴가제	- 규정없음	- 노사합의로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도 도입 가능
생리휴가	- 월1일 유급으로 부여	- 월 1일 무급으로 부여
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	-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- 연장근로 할증률 50%	-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-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%, 그이상 할증률 50%
탄력적 근로 시간제	- 2주 단위 : 취업규칙으로 도입, 1주 48시간 한도 - 1개월 단위 :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, 1일 12시간, 1주 56시간 한도	- 2주 단위 : 취업규칙으로 도입, 1주 48시간 한도 - 3개월단위 :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, 일 12시간, 주 52시간 한도
임금보전	- 규정없음	-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단체협약, 취업규칙 변경	- 규정없음	-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갱신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



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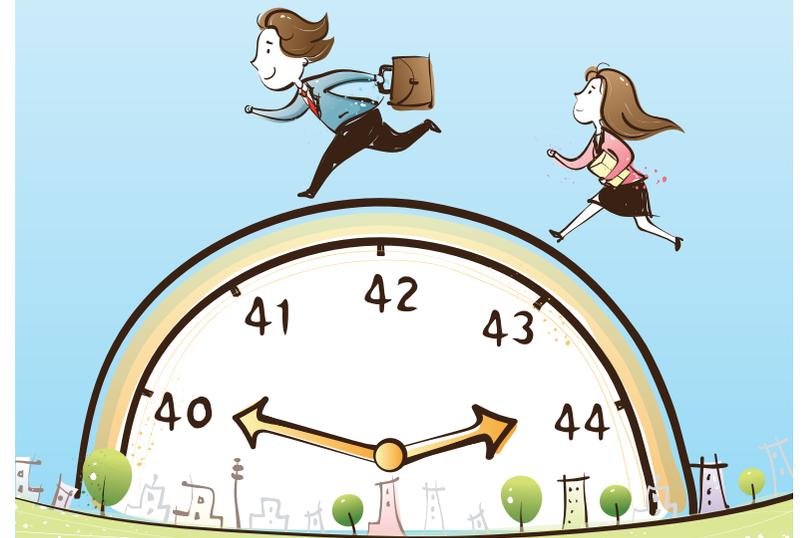
전국 지방관서 주소 및 전화번호

기관명	소재지	전화번호
서울지방고용노동청	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1~6층, 9층	02-2250-5725
서울강남지청	서초구 방배로 233(방배3동 1022-10)	02-598-0791
서울동부지청	송파구 가락동 78 11번차타운 동관 10층	02-2142-8818
서울서부지청	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플라자빌딩 3~5층)	02-2077-6136
서울남부지청	영등포구 선유로 163(양평동 1가 115)	02-2639-2193
서울북부지청	강북구 한천로 953(번동 432-5)	02-950-9731
서울관악지청	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6(구로3동 222-30)	02-3281-3288
부산지방고용노동청	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3(연산2동 1470-1)	051-850-6370
부산동부지청	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07-1번지	051-559-6620
부산북부지청	부산시 사상구 백양로 920(덕포2동 760-2)	051-305-1512
창원지청	창원시 의창구 (영호동 7-5)	055-239-6540
울산지청	울산시 남구 풍요나길 24(옥동 126-1)	052-228-1846
양산지청	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-21번지	055-387-0803
진주시청	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99-1번지	055-752-0026
통영지청	통영시 해미당로 107(무전동 356-130)	055-650-1910
대구지방고용노동청	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2(범어동 743)	053-667-6260
대구북부지청	대구시 북구 구암로 83(관음동 1372-1)	053-605-9050
포항지청	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	054-271-6740
구미지청	구미시 송정동 51	054-450-3510
영주지청	영주시 휴천3동 36	054-639-1155
안동지청	안동시 태화동 715-3	054-851-8030
충북지방고용노동청	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 62길39(구월3동 1113)	032-460-4550
인천북부지청	인천시 계양구 등기소길 8(계산3동 1077-1)	032-540-7952
경기지청	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로 337(천천동 575-5)	031-259-0208
평택지청	평택시 서정동 814번지 CK타워빌딩 3~5층	031-646-1126
부천시청	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(중4동 1032-2)	032-714-8741
안양지청	안양시 만안구 샘물길 31(안양7동 199-35)	031-463-7731
안산시청	안산시 단원구 원고잔1길 16(고잔동 526-1)	031-412-1902
의정부지청	의정부시 용현동 526-1	031-850-7732
고양지청	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,6층	031-931-2820
성남지청	성남시 분당구 변영로 215(아탑동 135-1)	031-788-1510
강원지청	춘천시 후평동 240-3(춘천지방합동청사 2층)	033-258-3570
강릉지청	강릉시 포남서2길 49(포남1동 1117-14)	033-650-2517
원주지청	원주시 무실동 1716-3	033-769-0801
태백지청	태백시 황지동 25-14	033-552-8603
영월출장소	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-1	033-371-6240
광주지방고용노동청	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~6층	062-975-6300
전주지청	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(인후동1가 807-8)	063-240-3370
익산지청	익산시 하나2로 44(여양동 626-1)	063-839-0022
군산지청	군산시 시청북문길 62(조촌동 852-1)	063-450-0580
목포지청	목포시 노동부길(상동 976)	061-280-0131
여수지청	여수시 문수로6(문수동 111-1)	061-6500-121
대전지방고용노동청	대전시 서구 시청북2길 12(둔산동 1303)	042-480-6250
청주지청	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(분평동 1427 합동청사 4층)	043-299-1151
천안지청	천안시 두정동 원두정1길 792	041-560-2841
충주지청	충주시 봉방동 21-38	043-840-4051
보령지청	보령시 옥마로 28(명천동 58-6)	041-934-0009

www.moel.go.kr



“ 2011년 7월 1일부터
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
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. ”





■ 주40시간제가 무엇인가요?

- 주40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.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.

■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면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?

- 일반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■ 주40시간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- 주40시간제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적용중이고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'11. 7. 1. 일부터 적용됩니다.

■ 주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?

- 주40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
- 다만,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나요?

- 5인 이상 20인 미만사업장에 '11. 7. 1 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16시간까지,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.
- 다만,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%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나요?

- 주40시간제 적용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, 생리휴가는 무급화됩니다.
-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1년 만근시 10일, 9월이상 출근시 8일,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8월 이상 출근시 15일, 추가 2년 근속시 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.
- 연장근로시간 상한선(주12시간→주16시간) 및 할증률(50%→25%)도 3년간 조정됩니다.

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낮아지나요?

-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- 그러나,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.

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나요?

-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- 그러나,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고 3년간 주당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50%에서 25%로 인하여 사업주의 실질적 임금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요?

- 주40시간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변경하고 임금보전 방법을 규정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■ 주40시간제 적용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고용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(6220-4323~3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의문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40시간제 도입시 숙지사항에 대해 전국순회교육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전화·인터넷·대면상담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교육일정·상담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에서 '주40시간제 교육' 배너를 눌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